##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283

발의연월일: 2020. 7. 22.

발 의 자:이용호·신정훈·김상훈

김정호・이상헌・아수진비

배진교 · 김수흥 · 장혜영

박재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각각 두고 있음.

그런데 보험가입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등을 심의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보험가입 자의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규정이 없어 보험가입자가 농어업재해보험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의회는 보상하는 재해범위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반영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에서"를 "제7항까지에서"로, "구성과 운영"을 "구성·운영 및 의견 수렴의 방법·절차"로 한다.

⑦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심의회) ① ~ ⑥ (생 략)	제3조(심의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⑦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
	<u>항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보험</u>
	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u>한다.</u>
<u>⑦</u> 제1항부터 <u>제6항까지에서</u>	<u>⑧제7항까지에서</u>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u>구성과 운영</u> 등	<u>구성·운영 및 의견</u>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u>수렴의 방법·절차</u>
로 정한다.	